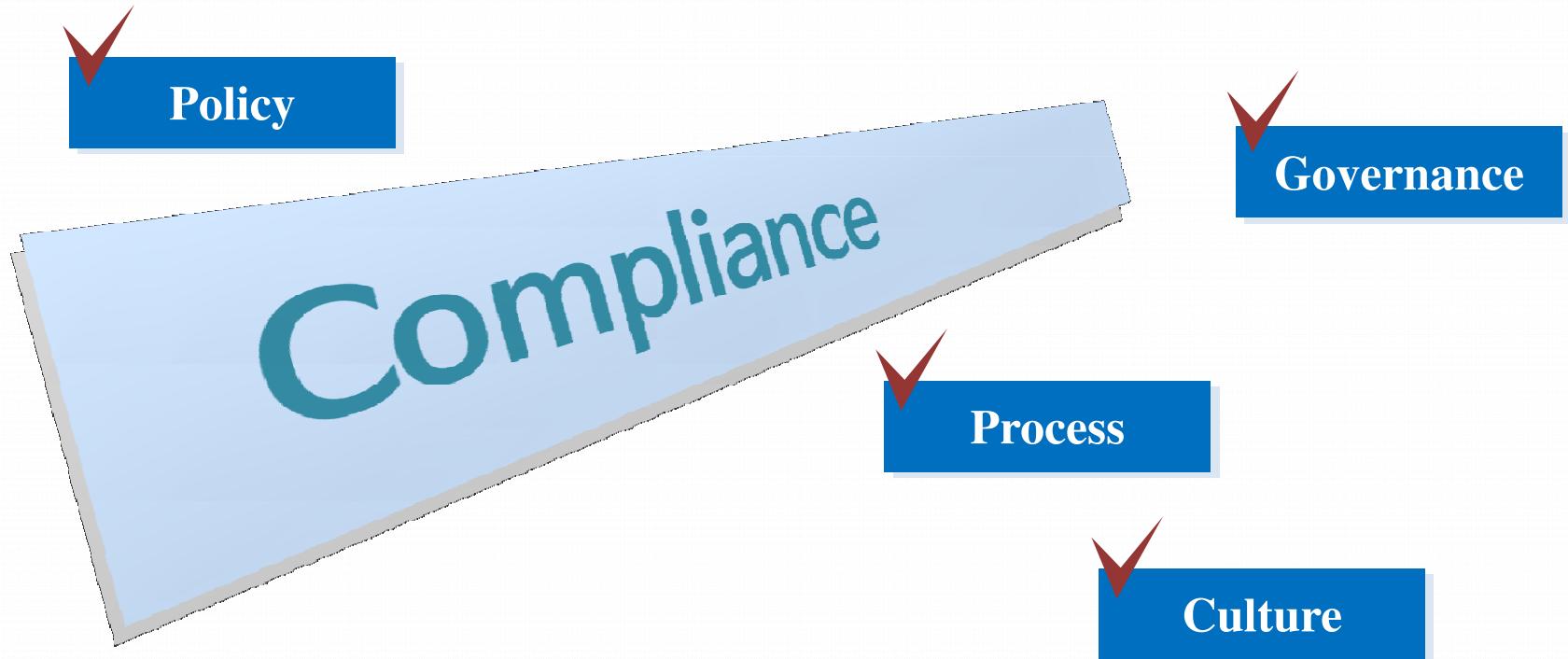


정부의 지침 및 기업의 준법수행 역할과 현황 세미나 – Topic 5.

Compliance 구축의 실무 요령



■ 전면적 구축과 단계별 구축 사이의 선택 (1/2)

법규 영역 - 공통 영역 vs 고유 영역

- 회사 일반 영역 : 상법, 자본시장법, 외부감사법 등
- 인사 · 노무 영역 : 근로기준법 등
- 일반영업 영역
 - ✓ 정유업 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 - ✓ 건설업 : 건설산업기본법 +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 - ✓ 유통업 : 유통산업발전법 +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 - ✓ IT산업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국제거래 영역 : 외국환거래법 등
- 정보 · 보안 영역 : 개인정보보호법 등
- 지적재산권 영역 : 저작권법 등
- 부정행위 영역 : 공익신고자보호법 등
- 공정거래 영역 :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
 - ✓ 독점규제 영역
 - 시장지배적지위 & 부당공동행위
 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
 - ✓ 공정거래 영역
 - 불공정거래행위 : 거래거절, 거래강제, 거래상지위남용 등
 - 부당지원행위 : 일감몰아주기, 거래매개행위(통행세 거래),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 제공행위
- 안전 : 산업안전보건법 등
- 보건 : 산업안전보건법 등
- 환경 : 토양환경보전법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, 대기환경보전법 등

[Topic 5.]
Compliance
구축의 실무 요령

Now

- 전면적 구축과 단계별 구축 사이의 선택
- 내부 부서와의 협력체계 & 협업 부서와의 인터뷰
- 외부 용역의 사용 범위 결정 - 빠른 구축 vs 느린 구축
- 체크리스트 개발 및 배포
- 법규 변경에 대한 관리 방안
- 법규 정보의 내부 전파 방안
- 금융권 모범규준을 참고할 사항과 이와 다르게 적용할 사항
-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차별적 관리 방안

[1] 적용 법률 확인 & 적용 조문의 차별적 취급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제1항 & 제2항 vs 제5항을 비교하면,

- 회사의 사업장에서 **도급**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
 - ✓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전체를 준법시스템에서 제외할 수 있음
 - ✓ 다만, 도급 발생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예비 조항으로 분류 가능
- 회사의 사업장에서 도급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**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개조 등에 관한 도급**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
 - ✓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을 준법시스템에서 제외할 수 있음
 - ✓ 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개조 등에 관한 도급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비 조항으로 분류 가능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도급사업 시의 안전·보건조치)

-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
 -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
-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.
 - 안전·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
 -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·보건관리
 -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·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
 -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
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
 -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
 -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
-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(製劑)를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전면적 구축과 단계별 구축 사이의 선택

- 내부 부서와의 협력체계 & 협업 부서와의 인터뷰

- 외부 용역의 사용 범위 결정 - 빠른 구축 VS 느린 구축

- 체크리스트 개발 및 배포

- 법규 변경에 대한 관리 방안

- 법규 정보의 내부 전파 방안

- 금융권 모범규준을 참고할 사항과 이와 다르게 적용할 사항

-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차별적 관리 방안

■ 체크리스트 개발 및 배포(4/4)

[3] 체크리스트의 분야별 · 부서별 배분

- ① 계약 부서에 할당되어야 할 체크리스트 : 도급계약 체결 시에,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개최 및 순회점검 실시를 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급계약에 반영될 것
- ② 도급업무 관리 부서(현업 부서)에 할당되어야 할 체크리스트 : 도급업무 진행 과정에서, 협의체 개최 및 순회점검 실시의 내용 및 주기를 준수할 것
- ③ 일반 안전관리 부서에 할당되어야 할 체크리스트 : 도급업무 관리 부서(현업 부서)가 협의체 개최 및 순회점검 실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일정한 주기 별로 확인할 것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도급사업 시의 안전 · 보건조치)

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.
 1. 안전 ·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
 2.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· 보건관리
 3.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·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
 4.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
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
 - 가.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
 - 나.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

[Topic 5.]
Compliance
구축의 실무 요령

- 전면적 구축과 단계별 구축 사이의 선택
- 내부 부서와의 협력체계 & 현업 부서와의 인터뷰
- 외부 용역의 사용 범위 결정 - 빠른 구축 VS 느린 구축
Now
- 체크리스트 개발 및 배포
- 법규 변경에 대한 관리 방안
- 법규 정보의 내부 전파 방안
- 금융권 모범규준을 참고할 사항과 이와 다르게 적용할 사항
-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차별적 관리 방안